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



2022. 06.

대 회 집 행 위 원 회

【문 제】

- 주식회사 한국택배(원고1), 한국택배의 근로자(직영 택배기사)인 권만수(원고2)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라고 한다) 상남지부의 지부장이자 갑산지회 소속 조합원인 가연심(피고1), 갑산지회 간부인 나태승(피고2), 다영섭(피고3)과 갑산지회 소속 평조합원인 마동석(피고4)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여러분은 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들 또는 피고들을 대리하게 될 변호사다.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사실관계는 3쪽-6쪽 [사실관계]와 같고, 이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들 또는 피고들은 7쪽 이하의 첨부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희망 소속 변호사인 여러분을 찾아와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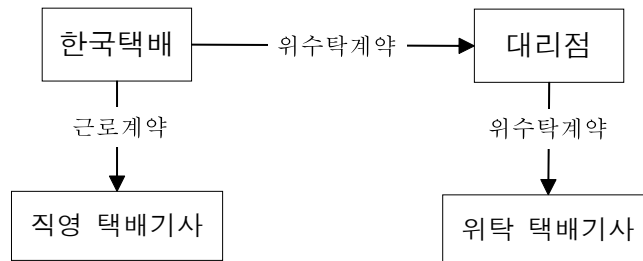
- 여러분은 다음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원고 또는 피고의 일방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하였음을 전제로 할 것
 2. 전 항의 선택에 따라 원고의 소장 및 피고의 답변서를 각각 작성할 것
 - 소장 및 답변서에는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원인, 항변, 법률상 주장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요건과 근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
 - 소장 및 답변서는 대법원 규칙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참조하여 15장 이내로 작성하되, 대회규정 “11. 서면 작성 방법”을 준수할 것
 - 소장 및 답변서의 당사자표시는 이름만을 기재할 것
 - 주어진 [사실관계] 외 가정적 사실관계를 상상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 공고에 제시된 문제에 지시된 사항에 따라 소장, 답변서 등 수행 과제의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모두 제출할 것
- 제출하는 소장 또는 답변서의 변호사 이름은“범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송인수”으로 기재하되, 그 성명 옆에 괄호로 참가팀의 참가번호를 기재하고, 서면 자체에는 참가팀의 소속 대학원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관할법원은“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는“2022가합1051 손해배상(기)”, 서면 작성일자는“2022. 6. 30.”로 할 것
-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대회연도-경연단계-지위-참가번호’순으로 붙일 것
(예: 2022-서-원고-8001)
- 제출기한을 준수할 것(2022. 7. 8. 금요일 18:00)

[사실관계]

- 주식회사 한국택배(이하 “한국택배”라고 한다)는 택배산업 시장점유율 30%에 이르는 대형 택배회사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본사를 두고 있다.
- 한국택배는 일부 직영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배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한국택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각 지역 대리점들이 택배기사들과 재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한국택배 등 택배사업자가 영위하는 택배사업은 택배 발송인과 수신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단위의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기능적으로 “집화 → 중계수송 → 배송”의 절차를 거치고, 장소적으로 “지역터미널 → 광역터미널 → 지역터미널”의 장소를 거친다.
- 상남광역시 갑산지역터미널 인근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한국택배 갑산대리점(이하 “갑산대리점”이라고 한다)은 한국택배 상남지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고, 가연심, 나태승, 다영섭, 마동석은 갑산대리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갑산지역에서 택배화물 집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이다.
- 가연심, 나태승, 다영섭 등 택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들은 2018년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상남광역시에 소재하는 대리점 소속 조합원을 관할하는 상남지부를

포함하여 전국에 12개 지부를 설치하였고, 가연심은 상남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택배노조는 2019년에는 갑산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를 관찰하는 갑산지회를 설치하고, 나태승을 갑산지회의 지회장으로, 다영섭을 선전국장장으로 선임하였다. 마동석은 2020년 갑산지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 택배노조(갑산지회)는 2020년 1월 한국택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한국택배는 자신은 갑산지회 소속 택배기사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교섭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이에 택배노조(갑산지회)는 2020년 6월 갑산대리점을 상대로 택배분류작업 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갑산대리점의 영업주 구자경은 가연심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불응하였다.
- 택배노조는 2020.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택배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7.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택배는 재심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2022년 6월 현재까지 1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 위 재심판정 이후에도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갑산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조정절차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거쳐 2022년 2월경부터 갑산대리점이 취급하는 택배분류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의 분류 및 배송거부를 시작하였다.
- 갑산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가연심 등 갑산지회 소속조합원인 택배기사들의 배송거부로 갑산지역의 배송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한국택배는 2022년 3월경부터 다른 지역에 있는 직영 택배기사(한국택배가 고용하고 있는 택배기사를 의미한다)를 동원하여 배송거부로 중단된 업무인 ‘갑산지역터미널에 도착한 택배화물을 갑산지역의 택배수신인에게 배송하

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에 갑산지회 소속조합원인 가연심, 나태승, 다영섭 3인은 2022. 3. 3. 9:30경 상남시 갑산구 소재 갑산지역터미널에서 택배화물 상차 지정 위치에 자신들이 운전해 온 택배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14:00경에 이르기까지 택배화물을 상차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같은 장소에 계속 주차해 두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택배가 투입한 대체 택배 화물차량이 위 상차 지정 위치에 주차하지 못하고 수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였고, 그 결과 한국택배는 위 대체 택배 화물차량에 택배화물을 싣기 위해 추가 인력을 동원하여 화물 운반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총 3,000만원 가량을 추가 인력의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 또한 가연심, 나태승, 다영섭, 마동석 외 6인의 갑산지회 소속조합원은 2022. 3. 7. 12:00경부터 14:00경까지 한국택배가 투입한 대체 택배 화물차량 12대가 택배화물을 싣고 위 갑산지역터미널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위 갑산지역터미널 출입구에 일렬로 서서 위 화물차량들이 터미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자 한국택배의 직영 택배기사로 위 터미널에 업무지원을 나온 권만수가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을 위 조합원들 쪽으로 천천히 운전하여 다가가며 밀어붙이면서 “야이 빨갱이 새끼들아! 어서 꺼져라”라고 외쳤고, 이에 격분한 마동석이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권만수의 멱살을 잡아 화물차량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권만수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부상의 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치료기간 동안 휴업으로 인한 급여 상실액이 120만원 발생하였다.
- 또한 가연심은 2022. 3. 8. 10:00경 위 갑산지역터미널에서 택배분류 장치인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을 중지시킨 후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라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택배분류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등 택배분류 작업을 방해하여 약 30여분 동안 택배분류 작업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택배 배송이 다소 지연되었다.

- 한국택배는 갑산지회가 주도한 이러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한 인건비 3,000만원과 택배의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회사의 신뢰도 추락으로 인하여 비재산적 손해 5억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권만수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일실급여 외에 정신적 손해로 1,0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 (노총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주식회사 한국택배

제 목 : 단체교섭 요구

담 당 : 상남지부 갑산지회장 나태승(010-2121-3232), 선전국장 다영섭

일 자 : 2020. 1. 20.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귀사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랍니다.
- 우리 노동조합은 귀사에게 노동조합법 제2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법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7일간 게시)를 시작으로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택배노동조합
(상남지부 갑산지회)
- 노동조합 대표자의 성명 : 박노란
- 교섭요구일 현재 상남지부 갑산지회 소속 조합원의 수 : 나태승 외 30명
- 노동조합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노총 빌딩)
- 교섭안건 : 사업장 내 최초 단체협약 체결 건(구체적으로 ①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건 ② 집하상품 인도시간 단축 건 ③ 서버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건 ④ 주5일제 휴가 및 휴일 실시 건 ⑤ 급지수수료 분류 체계 개편 건 ⑥ 사고부책 개선 건 등을 포함한 기본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실시할 것)
- 첨부 :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양식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박노란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0. 1. 2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0. 1. 21. ~ 2020. 1. 27.

○ 교섭요구서 기재 사항

-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교섭요구서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팩스번호 :)
- 문의처 : 주식회사 한국택배 (전화번호 :)

주식회사 한국택배

주식회사 한국택배

서울시 서초구 자본길 3, 15층 (충경빌딩) / 전화 (02) 3121-1122 / 팩스 (02) 3121-2211

수 신 : 전국택배노동조합

제 목 : 2020. 1. 20. 자 단체교섭 요구 공문에 대한 회신

담 당 : 인사팀장 연재초이(02-3121-1133)

일 자 : 2020. 1. 21.

- 귀 조합은 2020. 1. 20. 자 공문을 통해 단체 교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사로서는 위와 같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귀 조합은 개별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 조합의 갑산지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원인 나태승 등 택배기사의 경우 개별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택배 운송 서비스를 대행하는 독립사업자일 뿐,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귀 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개별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사와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바, 본사는 귀 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귀 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지 자체가 의문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갑산지회의 단체교섭의 문제는 본사와는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갑산대리점(대리점 주 : 구자경)과 논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정당한 해석에 따르면, 본사는 귀 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귀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밝히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한국택배 대표이사 세정킴

전국택배노동조합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 (노충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한국택배 갑산대리점(대리점주 구자경)

제 목 : 단체교섭 요구

담 당 : 상남지부 갑산지회장 나태승(010-2121-3232) 선전국장 다영섭

일 자 : 2020. 6. 20.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귀 대리점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랍니다.
- 우리 노동조합은 귀 대리점에게 노동조합법 제2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4조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법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7일간 게시)를 시작으로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택배노동조합
(상남지부 갑산지회)
- 노동조합 대표자의 성명 : 박노란
- 교섭요구일 현재 상남지부 갑산지회 소속 조합원의 수 : 나태승 외 30명
- 노동조합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노충 빌딩)
- 교섭안건 : 사업장 내 최초 단체협약 체결 건(구체적으로 ①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건 ② 집하상품 인도시간 단축 건 ③ 서버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건 ④ 주5일제 휴가 및 휴일 실시 건 ⑤ 급지수수료 분류 체계 개편 건 ⑥ 사고부책 개선 건 등을 포함한 기본 단체협약에 관한 교섭을 실시할 것)
- 첨부 :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양식

교섭요구사실 공고문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박노란
-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20. 6. 2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0. 6. 21. ~ 2020. 6. 27.
- 교섭요구서 기재 사항
 - 노동조합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 교섭요구서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팩스번호 :)
 - 문의처 : 주식회사 한국택배 갑산대리점 (전화번호 :)

한국택배 갑산대리점(대리점주 : 구자경)

한국택배 갑산대리점

상남시 중구 갑산길 3, 15층 (퀵빌딩) / 전화 (012) 5121-1122 / 팩스 (012) 6121-2211

수 신 : 전국택배노동조합
제 목 : 2020. 6. 20. 단체교섭 요구 공문에 관하여
담 당 : 총무과 희원희원(012-1111-1111)
일 자 : 2020. 6. 21.

- 귀 조합은 2020. 6. 20. 자 공문을 통해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 귀 조합 소속 조합원들 중 갑산지회 소속이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로서, 우리 대리점과는 오랜 신뢰 관계에 터잡아 독립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택배기사들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독립 사업자일 뿐, 우리 대리점 소속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즉 귀 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구성된 정당한 노동조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귀 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 요구 역시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는 자문 노무법인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리점으로서는 귀 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 이와 같은 노동조합법의 정당한 해석 상, 귀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만일 우리 대리점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리점주(구자경) 혹은 총무과장(희원희원)과의 개인적인 티타임을 통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한국택배 갑산대리점(대리점주 : 구자경)



중앙노동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20. 9. 17. 배포 즉시 / 총 5쪽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과 장 세희킴 조사관 지아파크	011-111-1111 022-222-2222

< 본 자료는 대회를 위한 가상자료로 <http://www.moel.go.kr> 에서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

중노위, 한국택배가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의 교섭요구에 한국택배는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함 -

- 한국택배 사건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하청노조)가 택배 물류회사(원청)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것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택배의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한국택배가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 * 금일 15시 노사 당사자에게 판정회의 결과(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를 노사 당사자에게 통보하였고, 구체적인 판단 법리 및 논거 등은 추후 판정서를 작성하여 노사 당사자에게 송부 예정
- 오늘 한국택배 사건 판정회의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동 사건의 단체교섭 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판단 요소>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사용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원·하

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

* 종래 대법원 판례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고, 하급심 판례는 단체교섭에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견해가 갈림

- 한국택배와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 존부 및 단체교섭 거부가 부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한국택배가 택배기사의 노무제공관계에 개입하고 있는 구체적인 형태, 한국택배가 택배기사의 노무제공조건에 미치는 지배력과 영향력 유무 및 그 행사의 정도, 교섭요구 의제의 내용과 성격, 단체교섭에 의해 노무제공조건과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한국택배의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 대리점 택배기사의 택배운송 노무는 한국택배 택배서비스사업 운영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대리점 택배기사는 한국택배의 택배서비스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택배운송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
- 대리점 택배기사는 한국택배가 구축·관리하는 택배서비스 사업 시스템에 편입되어 있고, 특히 한국택배가 운용하는 서브터미널에서 대리점 택배기사가 배송상품 인수, 집하상품 인도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구조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음

<전국택배노조의 6개 교섭요구 의제 관련>

- 전국택배노조는 한국택배에 대해 6개 교섭의제 요구
 - 6개 교섭의제 중 ①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② 서브터미널에서 택배기사의 집하상품 인도시간 단축, ③ 택배기사 1인당 1주차장 보장 등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3개 의제는 한국택배가 압도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 행사
 - ④ 주5일제 및 휴일·휴가 실시, ⑤ 급지수수료 분류 체계 개편, ⑥ 사고부책 개선 등 3가지 의제는 한국택배와 대리점주가 중첩적으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가지나, 한국택배의 부분적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인정함이 상당함

<교섭형태 관련>

- 상기 6개 교섭의제에 대해 한국택배는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택배기사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할 것임

□ 한국택배 사건 판정의 의미

- 한국택배가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을 전부 결정 내지 전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의 노동조건 중 일정 부분에 대해 한국택배가 단독 또는 대리점주와 중첩적으로 교섭의무를 가짐
- 이에 따라 한국택배가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 다만, 동 판정은 한국택배와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노조 사이의 단체교섭과 관련한 개별 사안을 다룬 것으로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님

<참고: 한국택배사건 주요 경과>

1. 당사자

- <노동조합(재심신청인)> 전국택배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택배
- '한국택배'는 '대리점주'와 일정 구역의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주'는 '대리점 택배기사'와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다면적·중층적 노무제공관계임
 - * <택배기사 유형> ① 동 사건과 관련된 대리점 택배기사(대리점주와 택배화물 운송 위수탁계약) 외에 ② 직영 택배근로자(한국택배와 근로계약), ③ 직계약 택배기사(한국택배와 택배화물 운송 위수탁계약)도 존재

2. 사건의 경위

- 단체교섭 요구(노동조합) → 단체교섭 거부(한국택배)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0. 1. 20. 한국택배를 상대로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무제공 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
 - 한국택배는 '20. 1. 21.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에 불응
 - *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 6. 8., 6. 28.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한국택배는 '20. 6. 29.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초심 → 재심)
 - (초심)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택배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 7. 30. 각하 판정*
 - * 대리점 택배기사의 근로시간 축소,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한국택배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한국택배와 대리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판정
 - (재심)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 8. 8.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을 신청

3. 재심 심문 및 판정 절차

❖ 총 심문회의 3회(증인 신문 1회 포함), 현장 조사 2회, 판정회의 2회 개최

□ 심문회의(3회)

○ '20. 9. 1. 1차 심문회의

- (개최 횟수) 노사 입장 대립, 전문가들 및 판례의 견해 차이 등을 고려, 노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심문회의를 총3회 개최하기로 결정
 -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개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동 사건 이전에도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등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심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향후에도 심문회의 충실화를 위해 활성화할 계획
- (증인 신문) 노사 당사자의 동의 하에 노사 양측이 각 1명씩 신청하는 증인(대리점주)에 대한 신문을 2차 심문회의 때 진행하기로 결정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조사 등)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사실 조사 등) 제2항에 의거 증인 조사 실시
- (현장 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사건의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 * 노동위원회법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6조(사실 조사 등) 제3항에 의거 현장조사 실시

○ '20. 9. 3. 2차 심문회의: 노사 당사자가 각 1명씩 신청한 대리 점주에 대하여 증인신문(반대신문 포함)

○ '20. 9. 9. 3차 심문회의: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등 당사자 주장 청취

□ 현장 조사(2회)

○ '20. 9. 11. 갑산터미널(피신청인 사업장) 현장 조사 실시

○ '20. 9. 12. 대리점 택배기사 현장 조사 실시

- 노사 당사자가 각 1명씩 추천한 택배기사(각각 중구 총연맹 서버터미널, 등촌 공공 서버터미널 근무)와 동행 및 문답조사

□ 판정회의(2회)

○ '20. 9. 15. 1차 판정회의: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20. 9. 17.에 2차 판정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

- * 노동위원회규칙 제26조(판정회의) 제3항에 의거 판정회의 추가 개최

○ '20. 9. 17. 2차 판정회의 개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과 지아파크 조사관(☎022-222-22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31. 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식지]



한국택배의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지난 2019년에 상남지부에 갑산지회를 설립하여 나태승 지회장을 필두로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에 한국택배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야말로 무반응, 무시. 철저한 무관심으로 응답했습니다. 365일 한국택배를 위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땀흘려 일하는 택배사가 노동자들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대하는 저들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산지회는 부당한 분류작업 문제 해결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수수료 체계 개편,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동환경을 요구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택배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택배의 답은 '우리는 사용자 아니다. 당신들은 노동자 아니다'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택배에 교섭을 하라고 명령하였지만 한국택배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1년 넘게 재판을 끌면

서 저희가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나태승 지회장은 2022년 갑산지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으로 승리하자”라고 발언하면서 쟁의행위를 제안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우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총투표 실시를 결의했습니다. 금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갑산지회 총 투표 결과

1. 조합원 수 : 33명
2. 투표 인원 : 30명
3. 찬성 : 27표
4. 무효 : 0표
5. 반대 : 3표

→ 투표 참여 인원 중 90%의 찬성투표로 쟁의행위 가결

이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은 본 소식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쟁의 지침을 밝힙니다. 전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쟁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갑산지회 조합원들은 2022. 2. 20.부로 쟁의행위를 실시한다.
2. 갑산지회 조합원들은 2022. 2. 20.부터 한국택배 각 거점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실시한다.
3. 한국택배 조합원들은 갑산지회 조합원들의 업무에 한국택배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는지 집중 감시한다.

전 국 택 배 노 동 조 합 위 원 장 박 노 란

전국택배노동조합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 (노총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주식회사 한국택배

제 목 : 쟁의행위 발생

담 당 : 상남지부 갑산지회장 나태승(010-2121-3232), 선전국장 다영섭

일 자 : 2022. 2. 18.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귀사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랍니다.
- 귀사의 거듭된 교섭거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노동조합은 90%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습니다.
- 본 노동조합은 2022. 2. 20.부터 분류작업과 배송업무 일체를 거부하는 적법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장기간 교섭을 거부한 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서울 서초구 민주길 3, 15층 (노충빌딩) / 전화 (02) 2121-1122 / 팩스 (02) 2121-2211

수 신 : 주식회사 한국택배

제 목 : 직영 택배기사 투입 중단 요구

담 당 : 상남지부 갑산지회장 나태승(010-2121-3232), 선전국장 다영섭

일 자 : 2022. 3. 2.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파업승리! 귀사의 발전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랍니다.
- 당 노동조합의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쟁의권 행사를 귀사가 불법으로 방해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극히 유감입니다.
- 당 노동조합이 2022. 2. 20. 쟁의에 돌입하였음에도 귀사는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다른 지역의 직영 택배기사를 갑산터미널에 투입하는 불법을 엄연히 저지르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귀사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불법 대체인력 투입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와 민형사상의 책임은 귀사에게 있음은 명확합니다. 지금 즉시 불법 대체인력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노동조합은 귀사가 대놓고 저지르는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술서

이름 : 권만수

생년월일 : 1971. 1. 1.

주소 : 서울 동작구 태배로 3, 12-1

연락처 : 010-567-1234

1. 저는 한국택배에 고용되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서 택배배송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 2022년 2월말에 회사에서 3월 한달 동안에는 갑산지역 택배물량 중 일부를 배송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갑산지역터미널에 출근하여 택배 분류작업을 한 후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그런데 3월 3일부터 노조 사람들이 한국택배가 사용하는 지정 상차 위치에 차량을 세워두고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차 위치에 차를 못 대니 멀리에 차를 대고 회사가 불러 준 용역 사람들을 써서 화물을 일일이 날라야 했습니다.
4. 3월 7일에는 제가 차량에 택배물량을 싣고 터미널 밖으로 운전해서 나가려는데 노조원 여러명이 출입구를 막고 차량을 아예 나가지 못하게 봉쇄하였습니다. 이미 차에 물건은 잔뜩 실려 있는데 아무리 비켜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뭐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비키라고 대거리를 하자 갑자기 불량하게 생긴 한 노조원이 제가 탄 차의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차 밖으로 끌어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5. 이로 인해 저는 온몸이 육신거리고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고 갑산정형외

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좌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로 전치 10일 진단을 받아 5일간은 입원하였습니다. 치료비는 총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1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제 한달 월급 360만원 중 10일치인 120만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6. 폭행당한 날 이후로 일을 하러 터미널에 가는 것이 두렵고 누가 차 옆에 다가오면 또 차문을 열고 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무서움증이 생겼습니다. 같이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조만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도 받을 계획입니다.

7.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며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매주노동뉴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전국택배노조 갑산지회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22. 3. 10. 08:20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노동조합이 있다. 2018년에 설립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갑산지회 이야기다. 갑산지회는 택배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택배기사들로서는 최초로 파업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파업이 18일째 되고 있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장기투쟁을 준비 중인 갑산지회 지회장 나태승(42세)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파업 18일째다. 현재 상황이 어떤가

갑산지회는 작은 지회이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푹푹 뭉쳐 흔들림 없이 파업 투쟁중이다. 매일 25명 이상은 꾸준히 터미널 앞에서 여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다른 지회와 지부에서도 많은 조합원이 찾아와 주고 있다.

- 터미널을 막고 있어서 배송 차질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 그런데 생각보다 배송차질이 크지 않다. 회사에서 다른 지역의 직영 택배 기사들을 많이 투입했고 화물 날라야 된다고 용역들도 많이 투입하고 있다. 평소보다 밀리기는 하지만 직영 택배기사들을 밤까지 굴리니 어느 정도는 배송이 되고 있다. 파업까지 무력화하는 돈의 힘이 무섭다.

- 직영 택배기사 투입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법에 엄연히 대체인력 투입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대기업이 이렇게 내놓고 법을 어겨도 되는지 모르겠다. 직영 택배기사들도 같은 노동자라서 가급적 다투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태도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다. 일부러 우리 조합원들을 자극한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최대한 평화롭게 설득하려고 한다.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동원되지 마시라고 피켓팅 하고 그런다.

- 직영 택배기사 폭행 사건이 언론에 크게 나기도 했는데

언론이 부풀린 감이 있다. 그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샷대질을 하면서 “빨갱이 새끼들아 꺼져라” 라고 했다. 나도 그 자리에서 똑똑히 들었다. 그런 말 듣고 화가 안 날 수 있나. 순간 흥분한 조합원이 왜 그러냐고 항의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그분이 넘어졌다.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다칠 상황도 아니었다.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옥실에 항의하는 정당한 과정이라는 측면도 있었다. 노조 차원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독려하고 있다.

-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국택배의 대화 거부가 원인이다. 지회를 만들어서 교섭을 요구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나. 단 한번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다. 중노위에서 판정하면 뭐 하나. 소송에서 1년 넘게 시간만 끌고 있다. 그동안 계속되는 택배분류 문제나 수수료 문제는 대체 누구와 이야기하란 말인가. 엄연히 노조설립증도 있는 노조를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 세상이라는게 너무 놀랍다. 재벌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는다고 들었는데 택배는 판세상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사태 해결의 키는 한국택배가 쥐고 있다. 당연하지 않은가. 대화를 해야 문제가 풀린다는 것은 초등학교때부터 배우는 것이다. 갑산지역만의 투쟁이 아니다. 이 문제는 전국의 모든 한국택배 터미널에서, 모든 지회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조만간 다른 지회들도 파업을 시작할 것 같다. 시민들이 택배를 못 받아서 불편하겠지만 택배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 자체는 많이 지지해 주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

주식회사 한국택배

서울시 서초구 자본길 3, 15층 (충경빌딩) / 전화 (02) 3121-1122 / 팩스 (02) 3121-2211

수 신 : 전국택배노동조합 상남지부 갑산지회

제 목 : 불법 쟁의행위 중단 촉구 요청의 건

담 당 : 인사팀장 연재초이(02-3121-1133)

일 자 : 2022. 3. 18.

- 귀 조합은 본사에 대해 2022. 2. 18. 부로 쟁의행위 개시를 통보하며, 노동조합법상의 권리를 빌미로 한달 째 불법 쟁의행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불법행위는 본사와 귀 조합 모두에게 불이익한 결과만을 도출할 뿐입니다. 본사는 귀 조합에 대해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우선 본사는 귀 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부재한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2020. 1. 21. 자 공문 이래로 강조한 바와 같이 ① 귀 조합 소속 조합원들, 택배기사는 개별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일 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본사는 위 택배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포함한 그 어떠한 법률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바, 본사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귀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들어 본사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주장하나, 이에 대해서는 본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합220608 사건)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가 계속 중인 바, 위 재심판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본사의 사용자성, 본사의 단체교섭의무 등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어코 쟁의행위에 돌입한 귀 조합의 행보는 유감스럽습니다. 본사가 귀 조합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점은 노동조합법의 해석상 명백한 바, 귀 조합의 쟁의행위는 불법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귀 조합이 불법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귀 조합은 불법 쟁의행위를 한달 째 계속하는 과정에서 본사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점을 지적하며, 경고합니다. 본 공문을 송달받은 즉시 불법 쟁의행위를 중단하지 않

을 경우, 아래와 같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1. 불법 정의행위로 인한 인건비 지출

본사는 귀 조합의 불법 정의행위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본사와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직영 택배기사를 통해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귀 조합 소속 조합원(가연심, 나태승, 다영섭)은 택배 차량을 이용해 갑천지역터미널 상차 지정 주차 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해, 직영 택배기사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본사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해 추가 인력을 동원하게 되었고, 총 3,000만원 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2. 불법 정의행위로 인한 기업 신뢰도 및 대외 이미지 손상

귀 조합의 불법정의행위로 인해, 본사의 전국적인 택배 배송 업무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귀 조합이 2020. 3. 8. 분류 작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관계로 본사가 예정한 배송 업무는 상당 시간 지연이 되었으며, 고객으로부터 수 많은 컴플레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 홈페이지와, 본사와 전속 배송 계약을 체결한 주요 고객사 홈페이지(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최근 다음과 같은 게시글이 수천개, 수만개가 작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성자 고객 ID	게시글 요지
근로기준법주해님	한국택배 이럴겁니까? 과일 주문한지 5일이 지나도록 갑천터미널에 묶여 있으면 과일 상하겠네요. 한국택배 손절합니다.
노동조합법주해님	ㅋㅋ 한국택배는 이제 한물 갔다. 진작 두섭택배로 갈아탔어야 하는데 요즘 온라인 쇼핑몰은 진짜 보는 눈이 없는 것 같다. 몇 년 전 노조 만들어진다고 깎죽거릴 때부터 진즉 한국택배랑은 연을 끊었어야 했다. 근데 내가 주문한 근로기준법 주해서는 언제 도착하나? 갑천이 도대체 어딘데 움직이지를 않냐? 블랙홀이나?
교섭창구단일화님	와이프 결혼기념일 깜짝 선물을 주문했는데 갑천인지 뭔지 그놈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를 않네요... 총알 택배 보장이라고 광

	고할 때는 언제이고.... 결혼기념일은 지났는데 선물은 안와요... 한국택배 기억하겠습니다. 한국택배로 배송해준다는 온라인 쇼핑 물은 보기도 싫습니다 진짜...
영장실질심사님	와... 진짜 욕나온다... 한국택배는 노동조합 만들어져서 불법파업 할 때까지 도대체 뭐했냐? 생일 케이크 오는데 일주일 걸리는거 실화냐? 역시 대세는 두섭택배지....
구속적부심님	난 노조고 뭐고 잘 모른다. 확실한 건 하나다. 한국택배는 이제 아니다. 월급 털어서 장모님 생신 선물로 다이슨 청소기 하나 샀는데, 장모님 생신은 지났고 청소기는 오지도 않는다. 어쩔한국택배?
임금피크제소송님	갑천인지 뮌천인지 불지르고 싶네요... 사람들이 왜 두섭택배 두섭택배 하는지 알겠어요. 우리 딸 집에 김장 김치 보냈는데 아주 숙성 김치가 되어서 배송 되겠네요... 그 때 한국택배를 찾아간 제가 바보죠 뭐....
부당해고구제신청님	한국택배 OUT! 님들 그거 알아요? 한국택배 이번에 주가도 엄청 떨어졌다네요.. 업계 1위의 9만택배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1주당 2만원이래요... 아예 그냥 한국택배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님들 아시죠? 택배는 두섭택배인거...

위 일련의 게시글과 같이 귀 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본사의 기업 신뢰도와 대외적 이미지는 끝도 없이 손상된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 등 주요 고객사들의 경우 당장 이번 불법 쟁의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사(두섭택배)와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본사 콜센터에 매일같이 걸려오는 개인 고객들의 컴플레인 전화로 콜센터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본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 귀 조합이 한 달 동안 단행하고 있는 불법파업에는 그 어떠한 명분도, 실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파업을 계속할 경우 귀 조합이 직면할 결과는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밖에 없습니다. 만약 귀 조합이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 파업을 중단한다면, 본사는 귀 조합과 전향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조합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주식회사 한국택배 대표이사 세정킴